

#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

-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**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\*으로 등록**하여야 합니다.  
\* '21년 유예(천톤이상&CMR), '24년 유예(100~천톤), '27년 유예(10~100톤), '30년 유예(1~10톤)
- 이에 **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“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”**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지원대상

- '24년 등록유예물질(100~1,000톤)
  - '24.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
  -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**중소·중견기업 2개사 이상**이 적극적 구성원(Active)인 물질

### 지원 제외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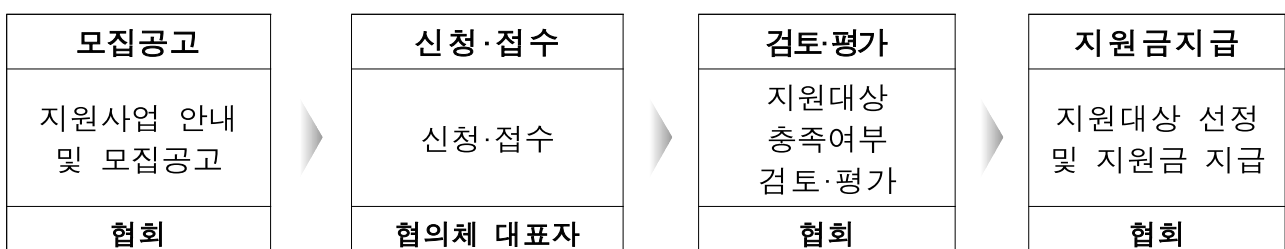
- ① 지원사업(전과정, 컨설팅) 기선정 물질
-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

## □ 지원내용

-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등록 최대톤수 기준)
  -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

## □ 운영절차

- (담당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- (운영절차)



## □ 신청 및 대상선정

○ (신청기간) '23. 9. 4.(월) ~ '23. 11. 30.(목)

※ 지원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
○ (신청대상) 협의회 대표자

※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대표자로 선정된 자

○ (신청방법)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([sbm.kcma.or.kr](http://sbm.kcma.or.kr))을 통해 신청

○ (신청서류)

구분	제출서류
1	지원신청서(신청시스템 내 작성)
2	협의회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
3	협의회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기업 확인서(정부기관 발급본)
4	컨설팅 계약서(협의회-컨설팅기관)
5	협약서 사본 1부
6	협의회 구성원 확인서(협의회 대표자 - 컨설팅기관 동일한 경우에 제출)
7	화학물질 등록 통지서(등록완료 시 제출)

○ (선정방법)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

- 지원조건, 지원예산 규모,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※ (평가기준) 중소기업 비율, 협의회 구성원수, 제조업체 비율 등

○ (선정결과) 월별로 선정하며, 익월 중 홈페이지\* 게시

\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[www.kcma.or.kr](http://www.kcma.or.kr)), 산업계 도움센터([www.chemnavi.or.kr](http://www.chemnavi.or.kr)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[sbm.kcma.or.kr](http://sbm.kcma.or.kr))

○ (지원금 지급)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

## □ 확인사항

-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 - 필요시 지원대상 검토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- 본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
-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
-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한 컨설팅기관\*과 계약된 경우에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
  - \* 산업계도움센터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
- 협의체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이 동일한 경우 협의체 대표자 변경 또는 전체 협약당사자의 확인서(붙임 3)를 제출하여야 지원사업 신청 가능
  - ※ 신청 공고일 이전 등록 완료 물질은 해당사항 없음
-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
## □ 문의처

담당기관	연락처
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등록지원팀)	02-3019-6780, 6799, 6724

- ※ 붙임 : 1. 지원신청서 1부.  
2.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.  
3. 협의체 구성원 확인서 1부.



**붙임2**

**협업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(신청시스템 내 작성)**

협업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

신청인	상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담당자/전화번호		e-mail	
	주소			

연번	상호명	사업자번호	대표자 (성명)	담당 자명	담당자 연락처	등록 톤수	선임 여부 (O/X)	동의 여부 (O/X)	기업규모 (대/중견/ 중/소)	중소·중견 기업확인서
										유효기간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15										

위와 같이 000물질(고유번호: , CAS번호: ) 협업체의 적극적 구성원은 「등록 컨설팅 지원사업」 신청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